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35

2025. 02. 24. 주택공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3. 최기찬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2025. 2. 6.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2025. 2. 24.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최기찬 의원)

1. 제안이유

- 주거취약자의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맞춤형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사회복지시설의 과부족에 따른 주거취약자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수요증 가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지원주택을 제도화하여 주거취약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지원서 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계획 대비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 며 이와 더불어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관리가 부실한 현실임

○ 이에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연간 최소 개최 횟수를 정하고,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 기준, 심의 제척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주택 의 지속적인 공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최소 개최 횟수를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2항제2호및제5호)
- 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시 위원의 제척사항을 추가함(안 제15조제1 항제3호)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개최 횟수, 심의·자문 대상의 확대, 위원의 제척사항 등 조례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지원주택의 정의> □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으로서의 지원주택 ○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지역사회 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서비스 지원 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 -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의 복지서비스 관행을 지역사회에 서의 보호(융합)로의 패러다임 전환 하나의 건물 또는 단지 내 모여서 거주 근거리 임대료 지원 생활능력 입주자는 자신만의 입주자의 다수는 주거공간을 통해 사전에 설정한 독립성 보장 대상집단 자신만의 명확한 주거공간 대상집단 사례 의료서비스 지원주택의 관리지 여가활동 지원 직업상담 속성 적절한 지원서비스 저소득층이 배제되지 제공물 통한 않도록 저렴한 주거비 지원 생활지원 임대료 부과 Supportive Housing 서비스 부담가능성

○ 먼저,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개최횟수를 매년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심의·자문대상에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 회1)의 보고사항"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기
능) ① (생 략)	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u>다음</u> 각 호에 대해 심의하	② <u>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u>
거나 자문한다.	<u>며, 다음</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주자 <u>선정기준</u>	2 <u>선정 및 퇴거기준</u>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u>
<u>5</u> . (생 략)	<u>6</u> . (현행 제5호와 같음)

- 위원회는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 분과위원 회를 운영 중인데, 분과위원회에서 지원서비스제공기관 및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면, 그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인정되고, 차기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2)
- 그러나, 지난 7월에 실시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이하 '서울시 감사')결과³⁾,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되었음에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개별 분과

¹⁾ 분과위원회 설치·운영개요

⁻ 운영주체 : 복지실(고독대응과, 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과), 시민건강국(정신건강과)

⁻ 구성인원 : 운영위원회 위원 중 5~7명

⁻ 역할·기능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 위원회 위원은 2개 이상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출처: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주택정책과-6621, 2019.4.8.)

^{2) &}quot;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주택정책과-6621, 2019.4.8.)

[&]quot;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23~27)",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주택정책과-112, 2023.1.3.)

^{3) &}quot;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서울시 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2024.7)

위원회의 심의 · 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대한 조치로 매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또한, 해당 감사에서는 이외에도 지원주택 입주가구 중 퇴거 사유4)가 발생했음에도, 그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 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을 요구한바,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문안건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사업체계도 및 기관별 역할〉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 지원주택 공급계획 수립
- · 사업부서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 확보)
-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등

주택정책실(주거안심지원반)



입주자 모집공고 등

- · 기존주택 매입 등
- · 입주자 편의시설 시공
- · 입주자 모집공고
- · 신청자 소득, 자산조회
- · 잔여공가 관리 등

SH공사

제공기관 선정

- ·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 심의
- →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입주자 (예비입주자 포함) 선정
 - · 제공기관 지도 · 감독 등

분과위원회(담당부서)

지원주택 운영

- · 입주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 사업시행 · 실적 보고 (시행7일 전, 년 2회)

제공기관

출처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23~27)(주택정책과-112호, 2023.1.3.)

-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
-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를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 주택 이용에 대한 기본 규칙을 어기는 경우
- 이 외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지원주택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4시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 출처: "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서울시 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2024.7), p.72

⁴⁾ 퇴거사유

- 위원의 제척사유와 관련하여(안 제15조제1항제3호)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심의대상을 추천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척사유에추가함.
- 이는 지난 서울시 감사 결과, 일부 지원주택 분과위원회에서 입주자 선정 시 지원주택 보조사업자⁵⁾의 임직원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본인이 소속한 기관에서 추천한 자가 지원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등 부 정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바 있어,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심의	
	<u>대상을 추천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u>	
	<u>하는 경우</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지원주택은 현재 매년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급 되고 있는데, 공급물량이 현저히 부족(검토보고서 붙임 참고)하고, 입주자 의 특성을 감안한 사전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매입임대주택을 매 입한 후 주택내부에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촉 구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⁵⁾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조례 제9조제1항)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대한 자구를 수정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Ⅷ.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번호 2435

제안일자 : 2025. 2. 24. 제 안 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15조제1항 제3호).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로 함.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 원회의 설치·기능) ① (생 략)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 원회의 설치·기능)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u>다음</u>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② <u>매년 2회</u> <u>이상 개최하여야 하며,</u> <u>다음</u>	
1. (생 략) 2. 입주자 <u>선정기준</u>	· 1. (현행과 같음) 2 <u>선정 및 퇴거</u> 기준	
3.·4. (생 략) <u><신 설></u>	3.·4. (현행과 같음) 5. 분과위원회의 보고 사항	
5. (생 략) 제15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5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①	제15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① (개정안 과 같음)
는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2. (생략)		1.•2.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3. 위원이 소속된 기관 에서 해당 심의대상 을 추천하여 입주대 상자를 선정하는 경 오	3. 위원이 소속된 기관 에서 추천한 후보자 를 대상으로 입주대 상자 선정을 위한 심 의를 개최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기준"을 "선정 및 퇴거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혅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 |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 치 • 기능) ① (생 략) 치·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 ② ----- 매년 2회 이상 개최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하여야 하며. 다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입주자 선정기준 2. ---- 선정 및 퇴거기준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 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 <신 설> <u>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주</u>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